

# 자동이체입금(CMS) 및 계좌간 자동대체 약관

## 제 1 절 총 칙

###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자동이체입금(CMS) 및 계좌간 자동대체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과 (주)BNK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이체입금: 고객이 지정한 지정출금일에 지정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입금금액을 인출하여 고객의 회사계좌로 자동이체 입금하는 서비스
2. 계좌간 자동대체: 회사 계좌간에 매월 지정일에 일정 현금이 자동으로 대체되는 거래
3. 지정출금계좌: 회사계좌로의 이체입금을 위하여 고객이 지정한 은행의 고객 명의의 출금계좌
4. 지정출금일 : 고객이 지정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입금금액을 출금하도록 지정한 일자
5. 지정대체일 : 고객이 지정한 회사 계좌로 자동대체출금 되도록 지정한 일자

## 제 2 절 자동이체입금(CMS)

### 제3조(자동이체입금(CMS)약정 등록 및 해지)

- ① 자동이체입금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지정출금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지정출금일, 자동이체 입금금액이 기재된 서비스이용신청서를 회사 영업점으로 내접 하여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출하여 약정등록을 마쳐야 한다.
- ② 약정등록 신청내역은 지정출금계좌의 은행으로 승인요청 처리되며, 해당 은행의 승인여부에 따라 약정등록이 거부 될 수 있다.
- ③ 고객이 CMS 자동이체입금 서비스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영업점을 내접하여 해지하거나 혹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제4조(자동이체입금)

- ① 지정출금일에 고객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입금금액이 출금되며, 지정출금일 익영업일에 고객의 회사계좌로 입금처리 된다. 다만 자동이체입금금액은 지정출금일 당일

은행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 된다.

② 지정출금계좌에서의 출금은 별도의 예금지급청구서 없이 고객이 약정한 회사의 청구 내역대로 처리 된다.

③ 자동이체입금 처리시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출금일 현재 고객이 지정한 자동이체입금금액보다 적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인출불가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이체입금이 처리되지 못한 경우 출금처리가 불가하며, 해당 출금일 이외에는 재 인출 처리되지 않는다. (익월 지정출금일에도 전월 미입금액을 재인출 처리하지 않음)

④ 지정출금일에 지정출금계좌에 수종의 자동이체입금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출금을 처리하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지정출금일이 휴일(토요일 포함)일 경우에는 지정출금일 익영업일에 지정출금계좌에서 출금처리 된다.

#### 제5조 (자동이체입금 동의를 철회)

고객은 지정출금일 3영업일 이전까지 회사에 자동이체입금 동의를 철회를 요청할수 있다.

### 제 3 절 계좌간 자동대체

#### 제6조 (계좌간 자동대체약정 등록 및 해지)

① 고객은 매월 지정일에 정해진 금액을 회사내 본인 또는 타인명의 계좌로 대체출금하고자 할 경우 계좌간 자동대체약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인 계좌간 자동대체: 전화 또는 영업점 내점을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청 가능

2. 타인명의 계좌로의 자동대체: 출금계좌의 고객이 본인확인서류 지참 후 영업점에 내점하여 신청하거나, HTS상에서 전자서명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신청. (단,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의 경우 영업점 내점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함.)

③ 고객이 계좌간 자동대체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영업점을 내점하여 해지하거나 혹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정계좌의 폐쇄시에는 별도의 해지신청서 없이 자동 해지된다.

#### 제7조 (계좌간 자동대체)

① 지정대체일은 고객이 교부받은 서비스이용신청서 상의 기재된 일자 중에서 고객이 지정하며, 해당 지정대체일이 비 영업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처리한다.

② 고객이 지정한 일자에 인출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처리가 불가하며, 출금계좌에서 동일한 날에 복수의 자동대체약정이 등록된 경우 계좌번호가 빠른 순서부터 처리한다.

## 제 4 절 공 통

### 제8조 (약관의 변경)

- ①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지하거나 영업점과 및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 홈페이지시스템,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 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최소 20일 전까지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 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의 홈페이지시스템,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홈페이지 서비스약관 등 전자금융거래관련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약관의 폐지) 이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CMS자동이체입금 약관은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